「K-반도체 전략」 중 세제지원 내용

- 기획재정부, **2021**. 5

1. 추진배경

- □ 4차 산업혁명 확산,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
-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 하여 지원 강화 필요
- □ 특히,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,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⇒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

2. 제도 현황

- □ 현재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, 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
- 신성장·원천기술*과 관련된 R&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&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
 - * (R&D, 반도체 부문 20개) 12nm 이하 D램, 220단 이상 낸드 설계·제조기술 등 (시설, 반도체 부문 15개) 7nm 이하 파운드리,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·장비부품 제조시설 등

〈 현행 R&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〉

● R&D 비용(%)	대	중견	중소
일 반	2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20~30		30~40

② 시설투자(%)		증기분		
७ 시글 무 사(/o)	대	중견	중소	5/1판
일 반	1	3	10	2
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٥

3. 세제지원 강화 방안

□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,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(가칭)핵심전략기술*에

 $2021 \cdot 06 \cdot 02$ www.eAnSe.com 15

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

- *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,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·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
- (지원내용) (가칭)핵심전략기술의 R&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
 - (R&D 비용) 신성장·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%p 상향하여 최대 50%(대기업 최대 40%)로 지원
 - (시설투자)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~6%p,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3~4%p 상향하여 지원 확대*
 - *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%(대기업)~20%(중소기업)로 과거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유사한 수준
 -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(가칭)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

● R&D 비용(%)	대	중견	중소
일 반	2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20-	30~40	
핵심전략기술	30-	40~50	

② 시설투자(%)		증가분			
❷ 시글무시(/0)	끕	중견	중소	5/1년	
일 반	1	3	10		
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)	
핵심전략기술	6	8	16	4	

- ⇒ 중소·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(중소기업 R&D 비용 최대 50%, 시설투자 최대 20%)
- (지원기간)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('21년 하반기 ~ '24년 투자 분)
 - '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

4. 추진계획

- □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 회에 제출
- □ (가칭)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, 관련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*
 - *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·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 여 엄격하게 선별

참고

A&Q

◇ 주요국의 세제지원 사례

- □ (미국) R&D 비용 일부에 대해 20% 세액공제 적용,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 지원 없음
- *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%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발의(「CHIPS for America Act」, '20.6월 발의)되었으나, 현재 의회에서 미처리
 - → 의회통과 여부 불투명
- \Box (대만) R&D 비용에 대해 15% 세액공제,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해 5% 세액공제 적용
 - ⇒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음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	통 화	명	5월 21일 (그)	5월 24일 (월)	5월 25일	5월 26일 (소)	5월 27일 (모)
		=1 (::==)	(금)		(화)	(수)	(목)
미	달	러 (USD)	1132.20	1126.90	1127.60	1122.80	1118.60
일	본	엔 (JPY)	1040.48	1034.57	1036.25	1032.13	1024.88
영	국 파 운	드 (GBP)	1606.20	1594.11	1596.17	1588.54	1579.24
캐	나 다 달	러 (CAD)	938.30	933.68	935.88	931.01	922.25
홍	콩 달	러 (HKD)	145.85	145.14	145.23	144.64	144.10
위	안	화 (CNH)	175.85	175.25	175.31	175.24	174.89
유	로	화 (EUR)	1384.28	1372.90	1377.42	1375.60	1364.08
호	주 달	러 (AUD)	880.12	871.09	874.23	870.56	865.63
싱	가 폴 달	러 (SGD)	850.80	846.31	849.06	847.20	844.19
말	레이시아링기	트 (MYR)	273.25	272.13	271.97	271.04	270.03

2021 · 06 · 02 www.eAnSe.com 17